

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(김호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9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8월 11일
발 의 자 :김호진 의원(1명)
찬 성 자 :경만선, 김인제, 김태호,
박기재, 성흠제, 우형찬,
이승미, 이영실, 이은주,
조상호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21의2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 사항 반영(별표 1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동차관리법」,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가목의 기준란 기호(·) 중 “5명”을 “3명”으로 하고, 같은 표에 다목의 기준란 기호(·)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들 수 있다.

- 1)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
- 2)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

별표 1 라목을 삭제하고, 같은 표 주)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표 주)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표 주)제5호를 주)제4호로 한다.

2.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공용통로, 화장실, 계단,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 제외하고 계산하되,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할 수 있다.

- 1)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
- 2)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
<p>[별표1]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(제4조 관련)</p>	<p>[별표1]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(제4조 관련)</p>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75%;">기 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가. 전시시설 연면적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660m² 이상으로 하되,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 기준(660m²)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. </td> </tr> <tr> <td>나. 전시시설의 구조(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한다)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다. 사무실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.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기 준	가. 전시시설 연면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660m² 이상으로 하되,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 기준(660m²)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. 	나. 전시시설의 구조(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한다)	(생략)	다. 사무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. 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75%;">기 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가. 전시시설 연면적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----- ----- 3명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/td> </tr> <tr> <td>나. 전시시설의 구조(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한다)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다. 사무실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만,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. 1)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)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기 준	가. 전시시설 연면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----- ----- 3명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	나. 전시시설의 구조(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한다)	(현행과 같음)	다. 사무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만,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. 1)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)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
구 분	기 준																
가. 전시시설 연면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660m² 이상으로 하되,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 기준(660m²)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. 																
나. 전시시설의 구조(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한다)	(생략)																
다. 사무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. 																
구 분	기 준																
가. 전시시설 연면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----- ----- 3명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																
나. 전시시설의 구조(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한다)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
다. 사무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만,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. 1)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)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																

현행		개정안	
구분	기준	구분	기준
라. 정비·성능 점검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u>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·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</u> 	라. <삭 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삭 제>
마. 출구 및 입구	(생략)	마. 출구 및 입구	(현행과 같음)
<p>주) 1. (생략)</p> <p>2. <u>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 시설 중 화장실, 계단,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.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<u>정비·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,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5. (생략)</p>		<p>주) 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공용통로, 화장실, 계단,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 제외하고 계산하되,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할 수 있다.</u></p> <p>1) <u>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</u></p> <p>2) <u>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4. (현행 제 5호와 같음)</p>	